

수원고등법원 2024. 12. 6 선고 2023나27386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수원고등법원 2024. 12. 6 선고 2023나27386 판결

수원지방법원 2023. 10. 31 선고 2023가단500010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정률 담당변호사 이승원, 전윤선

피고, 피항소인B중중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세 담당변호사 홍진원

변론 종결2024. 11. 8.

판결 선고2024. 12. 6.

제1심판결수원지방법원 2023. 10. 31. 선고 2023가단500010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와 주식회사 C 사이에, 제1심판결 첨부 별지(이하 '별지'라고만 한다)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 중 3/4 지분,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 중 1/4 지분에 관하여 2019. 4. 30. 체결된 매매계약을 210,438,888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10,438,88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약어와 별지를 포함한다).

○ 3면 5 ~ 10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다. C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지분의 처분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공유하고 있던 C와 F은(C는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3/4지분,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 중 1/4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다. 이하 C 소유 지분을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2018. 7. 30. 수탁자를 주식회사 G(이하 두 번째 기재부터 '주식회사'를 생략한다, 다른 주식회사들도 이와 같다), 1순위 우선수익자를 주식회사 H, 신탁원본 및 신탁수익의 수익자를 C 및 F으로 하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8. 8. 1. G 앞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 사건 신탁계약은 주식회사 I의 H에 대한 채무 이행 등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채무불이행 시에는 신탁부동산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환가·정산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이 사건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기간은 신탁등기 시부터 3년간이다.

2) C와 F은 2019. 4. 30.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2019. 6. 14.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신탁재산 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 곧 바로 피고에게 2019. 4. 30. 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3) 이 사건 신탁계약으로 담보되어 있던 H의 I에 대한 채권은 2019. 6. 14. 모두 변제되었다.』

○ 3면 하 6 ~ 7행의 " 수원지방법원 2019가합22718"을 『 수원지방법원 2019가합22718, 이하 '관련소송'이라 한다』로 고친다.

○ 3면 하 2행의 "537,549,000원"을 『837,549,000원』으로 고친다.

○ 4면 9행의 "결정을 하였다."를 『결정을 하였고, 2022. 1. 13. 위 결정문이 C에 송달되었다.』로 고친다.

○ 4면 하 7 ~ 8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 5, 8, 9,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원고는 D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있어 D가 C에 대하여 갖는 공사대금 채권에 대한 추심명령을 받았는데, C가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처분하였으므로, 사해행위를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을 구한다.

나. 피고

1) 원고가 D의 C에 대한 채권에 관한 추심명령을 받기 전에 D가 사해행위의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이 지났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이 도과한 후에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사해행위의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 관련소송에서 E가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라 주장하여 그 항소심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피고가 E에게 가액배상금으로 7억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이유로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제척기간 도과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민법 제406조 제2항이 정하는 채권자취소권의 행사 기간은 제소기간이므로 그 기간이 도과한 후에 제기된 채권자취소의 소는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하여야 한다. 한편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하는데, 이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한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5다10134 판결 참조). 그러나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처분하였다는 사실을 채권자가 알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의 사해의사도 채권자가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3262 판결 참조).

나아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취소원인을 알게 되어 제척기간이 도과한 경우라면 그 이후 위 채권에 대한 추심명령을 받은 추심채권자는 더 이상 피압류채권을 추심하기 위해 자신의 이름으로 제3채무자의 처분행위에 대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① 금전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라도 이는 강제집행절차에서 추심채권자에게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추심할 권능만을 부여하는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이 추심채권자에게 이전되거나 귀속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다73490 판결 참조).

②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는 피압류채권을 추심할 권능을 가지고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압류채권을 추심하기 위하여 자신의 이름으로 제3채무자의 처분행위에 대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추심채권자가 행사하는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은 추심채권자의 채권이 아니라 피압류채권인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이다(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다41523 판결 참조).

③ 한편 추심명령을 송달받은 제3채무자는 추심채권자가 통정한 허위표시에 있어 선의의 제3자로

보호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피압류채권에 관하여, 채무자에 대하여 주장할 수 있는 항변으로 추심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④ 유사한 국면에서 우리 대법원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채권자취소권을 대위행사하는 경우, 제소기간은 대위의 목적으로 되는 권리의 채권자인 채무자를 기준으로 하여 그 준수 여부를 가려야 한다고 보고 있으며(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0다73049 판결 참조), 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취소원인을 알게 되어 채권자취소소송의 제척기간이 진행되던 도중 채권자가 파산하여 파산관재인이 선임된 경우라도 그 제척기간은 파산관재인이 사해행위의 취소원인을 안 때부터 새로 진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4다24144 판결 참조). 또한 사해행위가 있는 후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알면서 피보전채권을 양도하고 양수인이 그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채권의 양도인이 취소원인을 안 날을 기준으로 제척기간 도과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본다(대법원 2018. 4. 10. 선고 2016다272311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을 제14, 15, 16, 17, 1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늦어도 관련소송의 제1심 판결이 선고된 2020. 11. 4.에는 C에 대하여 공사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던 D가 C의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C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원고는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인 2022. 1. 10. D의 C에 대한 위 채권에 대한 추심명령을 받고 2023. 1. 2.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위와 같이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이상 원고가 사해행위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된 후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는 주장은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

①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하여 일반채권자들에게 공동담보로 제공되는 책임재산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C가 가지고 있는 이 사건 신탁계약상의 수익권인데(이하 '이 사건 수익권'이라 한다),¹⁾ 이 사건 수익권은 C의 유일한 재산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C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 사건 수익권을 처분하였다는 사실을 D가 알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C의 사해의사도 D가

알았다고 할 것이다.

② E는 D로부터 2018. 8. 31.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피보전채권인 C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 중 일부를 양수받고, C가 2019. 6. 14.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해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자 불과 2달 만에 이 사건 매매계약이 유일한 재산의 처분이라고 주장하면서 사해행위취소 소송인 관련소송을 제기하였다.

③ 그리고 D의 대표이사인 M은 E의 사내이사인 점, D와 E는 그 설립 목적이 유사하고, 2017. 11.경 이래 같은 곳을 본점 소재지로 하고 있는 점, D는 E가 제기한 관련소송에서 피고가 채권양도통지의 효력을 문제 삼자 관련소송 계속 중인 2020. 2. 19. C에게 다시 채권양도통지를 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D는 E가 제기한 위 관련소송의 내용 및 진행 상황에 대하여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④ 그런데 관련소송에서 제1심법원은 2020. 11. 4. C의 이 사건 매매계약은 유일한 재산의 처분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E의 청구 중 대부분을 인용하였다(기각된 부분은 일부 지연손해금 청구에 불과하다). 따라서 최소한 위 판결 선고일부부터는 D도 C의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C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4. 권리보호이익이 없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여러 명의 채권자가 동시에 또는 시기를 달리하여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이들 소가 중복제소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어느 한 채권자가 동일한 사해행위에 관하여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를 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것만으로는 그 후에 제기된 다른 채권자의 동일한 청구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게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확정된 판결 등에 기하여 재산이나 가액의 회복을 마친 경우에는 다른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는 그와 중첩되는 범위 내에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게 된다(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다19558 판결, 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3다1643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선행 채권자에 의하여 제기된 사해행위취소소송 중 재판부의 화해권고결정이나 조정을 통해 가액배상 등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되어 후행 사해행위취소소송은 그와 중첩되는 범위에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3다16435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에 앞서 E가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던 점, ② 위 관련소송 제1심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E에게 837,549,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항소심은 '피고는 C를 대위하여 원고에게 7억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는데, 그 화해권고결정이 그대로 확정된 점, ③ 이에 피고는 E에 7억 원을 지급하였는데, 이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취소됨으로 인해 원상회복될 책임재산을 회복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점(화해권고결정에 '대위'라는 표현이 사용되기는 하였으나 피고가 C를 대위하여 C의 채무를 이행해야 할 의무를 진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고, 위 화해권고결정에 기재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에 따르면 피고의 E에 대한 의무는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가액반환의무임이 명백하다), ④ C의 책임재산이었던 이 사건 수익권의 가치가 7억 원을 초과한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는 점2)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사해행위취소 및 그 회복을 구하는 책임재산인 이 사건 수익권에 대하여 이미 다른 채권자인 E가 관련소송에서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그 회복을 마쳤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중첩된 원고의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3)

재판장판사박해빈

판사강은주

판사이승철

1) 위탁자가 금전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금전채권자를 우선수익자로, 위탁자를 수익자로 하여

위탁자 소유의 부동산을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에게 이전하면서 채무불이행 시에는 신탁부동산을 처분하여 우선수익자의 채권 변제 등에 충당하고 나머지를 위탁자에게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담보신탁을 해 둔 경우,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위탁자가 가지고 있는 담보신탁계약상의 수익권은 위탁자의 일반채권자들에게 공동담보로 제공되는 책임재산에 해당한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다20732 판결 참조).

2) 신탁재산에 대한 수익권의 가치는 장차 신탁이 종료되었을 때 예상되는 신탁재산 가액에서 소요비용과 신탁보수 등을 공제하고 거기에서 다시 우선수익자들에 대한 채무를 공제한 후 남은 금액을 사해행위 당시의 현가로 할인하는 방식으로 평가하여야 하고, 단순히 사해행위 당시의 신탁재산의 시가를 기초로 그 가치를 평가해서는 안 되나(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2다111401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이 사건 수익권의 가치에 대한 아무런 주장·증명을 하지 않았는바,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에서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라 담보된 채무와 선순위 채무를 공제하는 방식으로 그 가치를 산정해 보면, 311,068,642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관련소송 감정가 7,584,670,700원 중 C가 소유하는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은 5,448,835,175원인데, 여기서 H에 대한 채무 6,400,000,000원 중 이 사건 부동산이 부담하는 금액인 4,597,766,533원을 공제하면 851,068,642원이 남고, 다시 여기서 공동임대인의 불가분채무인 임대차보증금반환 채무 540,000,000원(을 제10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C와 F은 2017. 8. 30.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C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것으로도 보인다)을 공제한다]으로 산정되어, 위 7억 원에 훨씬 미치지 못한다.

3) 원고는 이 법원의 변론종결 후에 변론재개 신청을 하였으나, 기존의 쌍방 주장 및 제출된 증거들의 내용, 이 사건 소송의 진행 경과, 변론재개 신청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변론재개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변론재개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